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. 26 선고 2021가단1081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11. 24.

판 결 선 고 2022. 1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0,826,466원 및 그중 14,930,339원에 대하여는 2020. 11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, 12,341,501원에 대하여는 2020. 11. 2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, 제150조 제3항

판사 이순형

별지